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9.2.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3년 8월 22일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13년 8월 27일
- 다. 상정일자 : 제180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2013년 9월 2일)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선우근

가. 제안이유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국가 안전총괄·조정기관으로 안전행정부를 설치하고 국가안전관리에 대한 체계를 전면 개편함에 따라 우리구 행정기구 및 분장사무 일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임.

나. 주요내용

- (1)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총괄 기능 강화를 위해 국 명칭을 “행정관리국”에서 “안전행정국”으로 변경함.
- (2) 안 제4조에서는 안전행정국장의 분장사무 중 “안전도시 및 생활안전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전정책 총괄·조정 및 안전문화운동 등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여 강화된 안전 총괄 업무를 분장사무에 명시함.

3. 검토보고 (전문위원 명금길)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국가안전 관리체계 전면 개편 추진에 의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지자체에 안전조직 개편지침을 시달함에 따라 우리구도 안전 전담기구 명칭을 “행정관리국”에서 “안전행정국”으로 변경하고 강화된 안전 총괄 업무를 분장사무에 명시를 한 사항으로,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와 「서울특별시 마포구 법제 사무처리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